

## 2. 地方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988號 1996. 4. 27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9항 단서중 “차량의 취득은”을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취득은”으로 한다.  
제79조의 3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  
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  
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  
·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  
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  
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  
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  
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전·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

지 구·시·군 및 그와 연결한 구·  
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  
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  
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  
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  
면 및 그와 연결한 구·시·읍·면지  
역

제82조 본문중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지목변경후의 개별공  
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  
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지가를 말한  
다)의”를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

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130조의 5 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begin{aligned} & \text{사업장소재지 시·구 납부세액} = \text{법인세} \\ & \text{총액} \times \left( \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수} +}{\text{법인의 총종업원수}} + \right. \\ & \left.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text{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right) \div 2 \times \\ & \text{당해 시·군의 세율} \end{aligned}$$

제1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4조의 14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

업(자동차정비사업 및 자동차폐차사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 사업장용 또는 자동차폐차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중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결한 드른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를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결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제5호 본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제2호 라목 내지 바목과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2항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203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의”를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로 한다.

제219조 제1항중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결한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를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결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중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결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 일 것”을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결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96조 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 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 5 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 2 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협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

가표준액”으로 한다.

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영 제79조의 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영 제73조 제9항).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영 제181조).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영 제194조의 14 제3항). (법제처 제공)